

정책 · 입법 동향

- ◆ 본 정보지는 울산 북구의회에서 각종 부처 및 국내 연구기관 등의 최신 자료를 자체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 ◆ 의원님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울산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님의 전자메일을 통해 정기적(분기별)으로 제공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목 차

I. 정책 동향

1. 달라지는 법령·제도 1
2. 부동산PF 상황과 지방세입 영향 6
3.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사용 9

II. 울산 현안

1. 매장유산 발굴과 지역 개발 17
2.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의 지역 영향 분석 연구 26

III. 타 지자체 입법 동향

1.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36
2.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42

IV. 참고 법제정보

1.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소개(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보완 필요성) ... 48
2.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지방보조금과 정치적 중립) 51

V. 자치법규 Q&A 54

I. 정책 동향

달라지는 법령·제도

1. 'K-패스'로 교통비 환급 최대 60회까지 환급 (출처 : 정책브리핑)

-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4. 1. 9.)
-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환급,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며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됨.
 -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재발급 없이 홈페이지에서 전환신청을 통해 K-패스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
 -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

1회당 지출금			1,500원 (서울 시내버스)	2,000원 (기본요금 + 거리요금 추가 시)	2,800원 (광역버스 기본요금)	4,450원 (GTX-A 수서~동탄)
적 립 금	일반	20%	300원	400원	560원	890원
	청년	30%	450원	600원	840원	1,340원
	저소득	53.3%	800원	1,070원	1,500원	2,380원

* 1회당 적립금 예시로 1원 단위 올림한 값이며, 60회 이용 총액에 대한 적립금은 다를 수 있음

비고	1) 가입 첫 달은 월15회 미만 시에도 환급 / 이후부터는 15회 이상 이용 필수 2)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고속·시외·공항버스, KTX·SRT 등 제외) 3) 지출금액 월 20만원까지는 전액, 20만원 초과분은 50%만 환급률(20~53%) 적용 *예시) 월 60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22만원인 경우, 20만원+(2만원×50%)=21만원에 대해 20~53% 환급률 적용 (☞ 인정 범위는 대중교통 요금 변동 추이, 이용 패턴,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

- ◆ 지원대상 :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주민
- ◆ K-패스 참여 지역 : 17개 시도 189개 시군구 ※ 울산 전역 포함

2.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농업기계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2024. 6. 21. 시행)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폐농기계는 1만 4천여 대에 달했고, 폐농기계 상당수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자연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함.
- 방치농업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적절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가 어려울 경우 매각 또는 폐기
 - 방치된 농업기계인지 여부는 농업기계의 상태, 장소,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3. 사회복지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회복지요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규정하고 복무기관장 및 소속직원이 사회복지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
 - 「병역법」 일부개정(2024. 5. 1. 시행)
 - ※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95조제2항 신설
- 사회복지요원의 성실복무의무
 - 사회복지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괴롭힘 금지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지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 괴롭힘 발생 시 지체없이 조사 실시 및 피해 사회복지요원 보호조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1천만 원 이하), 피해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보호 및 비밀 누설금지 등 의무위반 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출처 : [특허청](#))

-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표법」 일부개정(2024. 5. 1. 시행)
 - 이전까지는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며, 거절 상표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
 -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표 분쟁의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5. 상습 음주운전자 규제 강화 (출처 : 정책브리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2024. 10. 25. 시행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 대상자는 2~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 가능함.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장치를 손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6. 112 거짓신고 시 처벌 가능 (출처 : 정책브리핑)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4. 7. 3. 시행)
 -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긴급조치 가능함. 공동 대응 및 협력이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7. 산림 내 임의 벌채 규정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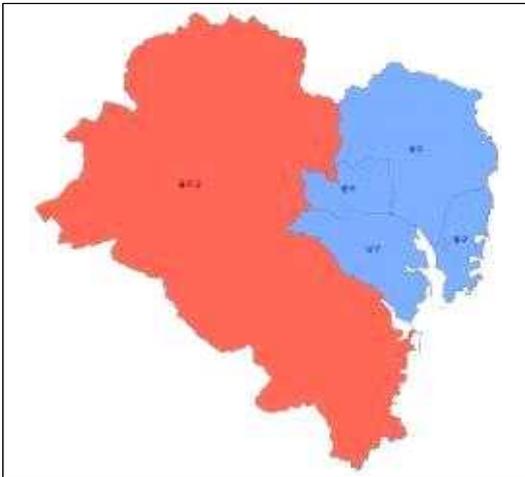
(출처 : 산림청)

-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4. 6. 12. 시행)
 - 용도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별도 허가·신고 없이 벌채 가능(제47조)

개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소유 토지라도 벌채 허가 필요 - 산림소유자가 본인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임의 벌채 허용
↓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연간 10㎡ 이내 임의 벌채 가능

8. 울산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 (출처 : 부산지방기상청)

- 기상청, 2024년 5월 30일부터 울산광역시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 시행
 - 기존 1개 행정구역에 1개의 특보 발표 → 기후변화에 따라 같은 특보 구역 안에서라도 기상·사회 특성이 서로 달라 방재 대응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기상청은 울산광역시 기상자료를 더해 지형, 인구 분포, 경제구조를 분석하여 2개의 특보 구역으로 세분화하였음.
- ※ 울산광역시 육상특보 구역도



구역	대상지역
울산동부 (파랑)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산서부 (빨강)	울주군

부동산PF 상황과 지방세입 영향

※ 세무1과 ※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1. 세수 및 부동산시장 전망

- 2023년 국세 수입은 344.1조 원으로 2022년 대비 51.9조 원(13.1%) 감소, 2024년 국세는 정부예산안 기준 2023년 결산액 대비 소폭 증가 전망
 -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 1천억 원(5.7%) 감소
- 2023년 지방세 수입은 2022년 대비 약 6.2%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4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4% 증가하여 소폭 개선되겠으나 회복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지방재정연구원은 세목별로는 자동차세(14.8%)*, 지방소비세 (4.4%), 주민세(3.3%), 지역자원 시설세(8.2%) 증가 및 지방세의 주요 세목들인 취득세(1%), 지방소득세(1.6%)의 소폭 증가 예상
 - * 자동차세는 유류세의 추가 인하 조치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대폭 증가
 - 지역별로 경제구조와 부동산시장구조 등에 따라 다른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지방세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부동산시장 전망은 작년에 이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로 위축된 상황
 - 수도권 일부 지역은 전세문제 및 미분양 문제로 인한 가격 하락 심화 예상, 비수도권은 미분양 누적 및 PF 부실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가속화 예상
- 부동산PF 위험 우려로 인한 준공 지연 및 그 영향으로 부동산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 방식으로 토지 매입, 건축비 등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며, 완공 후 판매나 임대 수익으로 대출을 상환
- PF 대출 단계 : 토지매입비 등 초기공사비의 브릿지론(착공전) → 본 PF대출 시행 및 분양대금으로 본 PF 일부 상환(공사중) → 준공후 입주잔금으로 본PF 상환(준공후)

2. 부동산PF와 지방세입 영향

- 2023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PF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 레고랜드 사태 이후 주택거래량은 평균의 65% 수준으로 감소,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 증가
-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율의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요인의 악화로 인해 부동산 PF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임.
 - PF 대출잔액은 2023년 말 135.6조 원으로 2020년 대비 46.5% 증가, 연체율 또한 2020년 대비 4.9배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중
 - 정부는 부동산PF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3 대책, 9.26 대책, 2024년 1.10 대책 등을 마련*
 - * 특례보증자리론을 통한 수요 촉진, 주택공급 지원 대책 등을 포함
- 지방세 세입 중 부동산거래와 밀접한 취득세 세입을 살펴보면, 2023년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2023년 취득세 세입은 2019년도 수준으로 감소함.

< 표 > 연도별·월별 취득세 세입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출처 : 지방세연구원

- 부동산PF에 대한 우려 및 준공 지연 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 당초 예상보다 주택거래 위축 폭이 커져 지방세입 수입 감소 전망
 - 2024년 취득세 세입은 2023년보다 소폭 하락한 2019년도 수준으로 징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택가격 하락폭에 따라 감소 규모가 커질 수 있음.

-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증가와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이는 준공예정사업장의 공사중단·준공 지연으로 이어져 공급부족·미분양 증가시 지방세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
- 정부는 정책적 대책을 통한 시장 상황 개선하려 노력 중이나 세수환경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
- 특례보증자리 공급은 출산가구 등에 집중되어 있어 거래 촉진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존재하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조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등 여러 대책 수립 중

3. 정책적 시사점

-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은 하락 조정기로 2024년 주택시장은 2020년~2021년 형성된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 부동산시장 외에도 기준금리 상황, 소비자물가, 경제 성장 전망의 하향 조정 등 지표로 미루어 볼 때 지방세 수입의 둔화 가능성 존재하고 불확실성 또한 높음.
- 지방세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세입 다변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다양한 세입원 발굴이 필요함.

의정활동 착안사항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동산 PF의 연착륙 정책방향' 발표

: 2024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PF 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총당금 적립 노력, 건설사의 건설수요 및 유동성 지원 등을 지원해 왔으며 PF연착륙을 위해 ▲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엄정한 사업장 판별 유도 ▲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 ▲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유도 ▲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 [금융위원회](#))

☞ 부동산 PF 위기에 지방 일부 저축은행 연체율 8%대로 상승

: 지난해 말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국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지역의 연체율은 전년(3.5%) 대비 4.6% 포인트 증가한 것임.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6.4%로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임. (※ [관련기사](#))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사용

※ 소관부서 : 건설과 ※ 출처 :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 정부의 국유지 정책기조 변화

○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 단일 필지에서 건축 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 도입, 16곳 시범사업 추진 등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 마련
- 그러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함.
- 구체적으로 국유지는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공급하여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 전국 어디서나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국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 또는 도시숲, 정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정부 관리여력 한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

- 기획재정부 국고국의 국유재산심의관이 국유지 정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방대한 국유지(2만 5,239km², 약 580만 필지)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 등 정책 현안을 대응하기에는 기구와 인력(현재 26명)이 부족한 상황임.
- 국유지 활용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과 해당 지역 거주민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유지 활용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해짐. 지자체별로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는 정책방향에 따라 국유지를 매각, 임대, 교환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도 함. 국유지와 공유지가 인접한 토지의 경우 공동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수익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상호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교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2. 국유지 사용 쟁점

○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잇달아 국유지 변상금 부과

- 2011년 4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취득을 전제로 무상사용을 1년으로 제한하는 감면 조건이 신설됨.
- 이후 지자체의 국유지 또는 국가공기업 소유 토지의 무상사용 기한 만료에 따른 변상금 또는 임대료 부과에 관한 소송이 언론에 보도됨.

지자체	국가 관리주체	주요 경과
대구시·수성구	한국농어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9 수성못 주변 땅과 도로, 산책로 등의 사용료 요구(1·2심 대구·수성구 패소, 19억 5천5백만원 지급명령) · 2023 재산세 5년치 8억 7천만원 및 종합부동산세 2022년도분 21억원 공사에 부과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12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전 지상부지 공원 조성 협약 체결 · 2017.7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변상금(421억원)부과 계획 통보 · 2021.2 서울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2024년 초 판결 예정)
제주시	제주항공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 제주항공청은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용담레포츠공원 부지 무상 제공 · 2023 5년치 사용료와 가산금(이자)를 포함해 7억 9천7백만원 제주시에 변상금 부과 · 연간 1억원 사용료와 관리비 상계 처리로 양 기관 협약 및 소송 취하

▲ 지자체의 국가공기업 소유지 또는 국유지 무상사용에 관한 소송 사례(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 국유재산 활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과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반면, 경의선 숲길과 같이 법령 개정 이전에 공원 조성협약을 맺고 도심 속 공원으로 기능하는 경우까지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여 국가 세입 확보에 치중함.

○ 국유재산 변상금 제도 우리나라 유일... 실익 없이 행정력 낭비만

- 「지방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소유하기만 하면 공공용 혹은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함. 이러한 취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함을 전제로 함.
-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법원은 중앙정부 선행행위를 기반으로 장기 점유권원을 인정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정부간 사용료 징수는 국민 관점에서 재정 확보 실익이 없고 행정력 낭비만 야기함.
- 만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소유 구분을 전제로 사용료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지방세 정책도 국가 등 소유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세 세수보전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3. 국·공유지 교환제도 활용 방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교환을 통해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 증가

-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소한 행위라도 소유권자의 동의와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적극적인 활용 차원에서 상호 교환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업무처리 시간의 지체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음
 - ※ 「국유재산법」상 교환이 가능한 사유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 관리의 효율성,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는 목적, 상호점유 등으로 규정

○ 합리적인 교환의 기준과 방식 마련 필요

- 국유지와 공유지의 교환 시 적용되는 원칙은 등가에 의한 교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 **방식 1** :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식(가장 신속하고 추가 행정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음)
- ☞ **방식 2** :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용은 소요되지만, 현재 및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교환은 등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 가능

- ☞ **방식 3** : 할인율의 적용은 특혜 시비가 없도록 최소한에 그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할인율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

예) 재정자립도 20% 이하 → 30% 할인

재정자립도 20% 초과 30% 이하 → 20% 할인

재정자립도 30% 초과 40% 이하 → 10% 할인

- 교환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에 따라 토지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여부가 교환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의정활동 착안사항

☞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우리 구 맞춤형 전략 필요

- 우리 구의 경우, 제8대 의회 들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 6월 기준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됐으며, 이중 호계역 공원 조성,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등을 위한 ‘국유지 매입’ 건이 포함되었음.
- 국유지 변상금 부과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우려될 수 있는 사업 지연 혹은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의 활용방식에는 매각 외에도 교환, 대부, 양여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특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주요업무계획 기준, 우리 구 국·공유재산
: 국유재산 4,975 필지, 시유재산 6,845 필지, 구유재산 3,806 필지(총 15,626 필지)
- 더불어,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명시된 국유지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적 검토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등 우리 구에 유리한 맞춤형 전략으로 국유지 활용을 접근해야 함.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1.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항만·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가격의 4분의 3(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54조 제1항 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 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⑦ 중앙관서의 장 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교환 사례 : 이건희 기증관 건립



▲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의 9 일대 이건희 기증관 부지에 임시로 개방된 열린송현 녹지광장

○ 배경

-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서 용산과 송현동 부지가 기증관 건립을 위해 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와 송현동 부지에 대해 무상대여 협의를 완료하였음.
-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영구 시설물인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에 따라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 건축물 축조 불가능함. 문체부는 송현동 부지 매입비가 추가 필요하게 됨.

☞ 이건희 기증관 : 삼성 이건희 회장 유족이 2021년 4월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인 ‘이건희 컬렉션’ 2만 3,181점을 보존·전시·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기증관을 만드는 사업임. 이건희 컬렉션에는 경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를 비롯해 국보 14건과 보물 46건이 포함되어 있음. 기증관은 경복궁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연 면적 2만 6,000㎡ 규모로 총사업비 1,186억 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임.

○ 추진결과

- 서울시 내 국가가 소유한 부지 현황을 파악,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사업취지 및 필요성, 추진계획 등 설명)하여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에 성공함.
- 이에 송현동 부지를 기증관 건립부지로 최종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업무협약을 체결(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기증관 건립절차 협력 추진 등, '21. 11. 10.)하여 송현동 부지 9,787㎡와 강남구 (구)서울의료원 부지를 맞교환함.
- 송현공원 부지 일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건폐율 증가) 교환 대상 부지면적 절감(약 1,983억 원 예산 절감효과)했고 부지 교환 시 감정평가 대신 개별 공시지가 적용(감정평가비용 약 1억 원 절감)했으며, 행정절차를 간소화(「국유재산법」 근거)했음.

II. 울산 현안

매장유산 발굴과 지역 개발

※ 문화체육과 ※ 출처 : 국가유산협업포털 외

1. 개념 및 배경

- 매장유산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으로, 고고학에서는 발굴대상이 되는 유적(遺跡), 유구(遺構), 유물(遺物) 등이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 및 보호되며,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시 사전 조사와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매장유산 발견 사례가 꾸준히 존재
 - ※ 출처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협업포털
-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시 공사의 규모·위치에 따라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과정을 거침
 - 지표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지역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분포범위를 확인(역사·민속·자연환경 등에 대한 문헌 및 현장조사를 포함)
 -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표본조사(조사대상면적의 2% 이내), 시굴조사(조사대상면적의 10% 이내)를 시행, 이후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여 매장유산 분포지역에 대해 전면 조사

매장유산 지표조사 조건

- 토지·내수면·연안에서 건설공사 시행시 사업면적 3만㎡ 이상일 경우
 - 내수면·연안에서 시행하는 골재 채취 사업은 15만㎡ 이상일 경우 해당
- 과거 매장유산이 출토·발견된 지역, 역사서, 고증된 기록, 연구 결과에 따라 매장가능성이 높거나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이 있는 경우
-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 보존조치 방법*을 통보
 - * 원형보존·이전복원·참관조사·발굴조사·매장유산 발견 시 신고
-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매장문화재를 현상 보존, 이전 보존, 기록 보존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보존하게 됨.
 - 발굴완료 후 보존유적 조치된 구역이 아닐 경우,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은 없음.

2. 울산 현황

- 북구에는 지정유산 14개, 문화유적분포지는 201개가 소재함. 매장유산유존지역은 지정되지 않아 소규모 개발시에 지표조사·발굴조사가 필수적인 지역은 아니나, 대단위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무덤을 비롯해 유물·유구가 출토되며 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장유산이 발굴되고 있음¹⁾
- 최근 중산스포츠타운 부지에서 매장유산 표본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생활흔적*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에 정밀조사를 신청한 상태
 - * 생활유구 및 분묘 53기, 삼국시대 석실묘 1기 등 총 54기의 유구
- 2007년 북구 매곡동 택지개발 B지구(매곡동 330-2번지)에서 총 117기의 유구 및 474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현지보존 결정하에 부지 내 유적보존 및 복원하고, 이전 복원되어 현재의 온누리공원(매곡동 유적공원)으로 조성됨.
- 2020년에는 중구 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청동기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주거지 및 분묘 등 1246기의 생활유구와 860점의 유물이 발굴, 규모로는 검단리 유적에 필적하며 학술적 가치가 높음(※ [관련 보도](#))
- 2015년 울산시립미술관 공사 당시에 부지 발굴조사를 통해 울산객사의 주요 건물인 학성관, 제송문, 남문루를 발견, 문화재청으로부터 당시 원형보존 조치 통보를 받음. 울산시립미술관은 기존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건립했으며, 2027년까지 학성관과 남문루를 복원하고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

[그림] 북구 중산동 인근 문화유적 분포 및 발굴사업지 현황



※ 출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1) <https://www.yna.co.kr/view/RPR20220616003800353>

3. 매장유산과 관련된 갈등 및 해결 노력

- 매장유산 보존과 관련해서는 항상 갈등소지가 존재, 과거에는 매장유산 발견 시 공사기간과 개발 이익 문제로 발견된 유물을 파괴·은닉하는 경우도 있었음.
 - 2000년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과정에서 조합 측이 한밤중 몰래 발굴된 유구를 파괴했다가 조합원 일부가 구속됨.
- 공공시설물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민간개발의 경우보다는 경제적 갈등은 적으나, 준공일시 연기나 기록보존·이전보존이 아닌 원형대로 현상보존조치 결정시에는 기존 부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음.
 - 2017년 충주종합스포츠타운 건설시 선사시대 적석목관묘 등 국내최대 규모의 청동기 시대 유적·유물이 발굴되어 인근 부지에 이전·복원(2017년)
 - 2004년 보은시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청동기시대 유적(보은장신리유적) 발견, 현지보존결정되어 복토 후 원형보존, 국민체육센터는 이전하여 건설
- 2023년 서울시 송파구 복합청사 건립 사례등 법적 갈등 발생 사례도 존재
 - 서울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결과 원형보존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 이에 송파구가 문화재청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각하됨.

[울산 사례]

1. 울산시립미술관 - 부지 확정과 관련된 갈등

- 2015년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였던 울산초등학교 부지에서 울산읍성의 객사터와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부지 이전이 논의되었고 이에 주변 주민의 반발과 갈등이 발생
 - 울산시립미술관 대체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혁신도시 이전안이 발표되었고 미술관 유치를 통한 원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성남·옥교·북정·북산동 등 주변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인, 상인들은 부지 변경안에 강하게 반발
 - 당시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음.
- 결국 기존 부지 옆 북정공원 자리로 부지가 변경,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시립미술관은 건립 시기가 1년여 늦춰지며 전체 예산이 30억원 가까이 증액되었음.

2. 울산 다운2 공공주택지구 - 발굴 후 전시관 조성 관련 문제

- 2021년 다운2공공주택지구 사업지 일원 8만 2,100㎡ 부지 일원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1246기의 생활유구와 860점의 유물이 발굴, 문화재청은 6만1000㎡부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도록 함.
- 2022년 말부터 다운2 공공주택지구 전시관 조성을 위해 세 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전시관 위치·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로 LH와 울산시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음.

- 한편 문화유산의 보호 측면에서는 발굴 및 보존·연구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의 시행자만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2022년 매장문화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술적인 목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개인의 소규모 단순개발시 영세사업자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굴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을 시행 중
 - 또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8월부터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주차장 개발, 묘지 조성, 농·산림 경작 시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가능, 개발 면적은 5,000㎡ 이하로 제한²⁾
- 그러나 공사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제책은 아직 없어 이로 인한 갈등 소지는 여전히 존재

4. 시사점 및 제언

- 중산스포츠타운 부지 인근 여러 건설 부지에서 고분유적, 생활유구 등이 발견되었으나 대체로 유물만을 보존하거나 기록보존 처리
 -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정밀발굴조사 결과 기록보존 후 공사 시행(2014) 등
- 유적·유구가 발견된 중산스포츠타운 부지는 이후 발굴조사 진행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역사적 가치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주민의 체육시설 필요성과 유적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중산스포츠타운 부지 외에도 북구 내에는 산업로 배면도로구간 내 유적(울산 효문동 죽전곡유적) 등 유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유적의 보존·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전시관 조성을 통한 지역 역사 홍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 검토 가능.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 8. 14. 시행)

의정활동 착안사항

☞ 소규모 공사시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발굴 유적에 대한 비용 지원

: 단독주택 등 소규모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발굴 유적에 대한 보존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8.14.시행)을 통해 단독주택 및 소규모 농어업시설·개인사업장·공장에 대해 소규모 발굴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표본·시굴 비용 지원(※ 붙임3 참고)

☞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의 공존 - 서울시의 '공평동 룰' 사례

: '공평동 룰'은 공사 중 문화유산이 발견되면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약속받는 대신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임. 2015년 공사 시작 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유구를 발견,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시함. 건물 지하 1층을 '공평도시 유적전시관'으로 조성하여 유적을 원형 보존하되 용적률 200%를 더 부여해 기존보다 4층 높은 26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국가유산(지정유산)**

연번	종목	명칭	지정일	분류
1	보물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2021-12-22	유물/불상
2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	1997-10-09	유물/불상
3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신흥사 구 대웅전 단청반자	2017-01-19	유적건조물/사찰
4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신흥사 석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	2019-01-10	유물/불상
5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성불선원 제석천도	2022-12-15	유물/탱화
6	울산광역시 무형유산	울산쇠부리소리	2019-12-26	무형유산/구비전승
7	울산광역시 기념물	중산동고분군	1997-10-09	유적건조물/고분군
8	울산광역시 기념물	우가산유포봉수대	1998-10-19	유적건조물/봉수
9	울산광역시 기념물	유포석보	1998-10-19	유적건조물/성곽시설
10	울산광역시 기념물	상안동지석묘	2000-11-09	유적건조물/지석묘
11	울산광역시 기념물	창평동지석묘군	2000-11-09	유적건조물/지석묘
12	울산광역시 기념물	곽암	2001-12-20	자연유산/천연기념물
13	울산광역시 기념물	달천철장	2003-04-24	유적건조물/금속광산
14	울산광역시 기념물	중산동취락유적	2003-04-24	유적건조물//유적분포지
15	울산광역시 기념물	강동화암주상절리	2003-04-24	자연유산/천연기념물
16	울산광역시 기념물	대안동쇠부리터	2006-01-26	유적건조물/금속광산
17	울산광역시 기념물	울산매곡동생활유적	2007-11-22	유적건조물/선사유물
18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박상진의사생가	1997-10-09	유적건조물/탄생지
19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대안동신흥사구대웅전	1998-10-19	유적건조물/불전
20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묘법연화경 권1	2019-11-21	기록유산/전적류
21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선원제전집도서	2019-11-21	기록유산/전적류

□ 문화유적

○ 복구 내 문화유적 총 201개소

- 매장유산 관련지(104개소) : 유물산포지 74개소, 고인돌 5개소,
고분군 24개소, 선사분묘 1개소
- 근대건축 등 기타 문화유적(97개소)

○ 유적분류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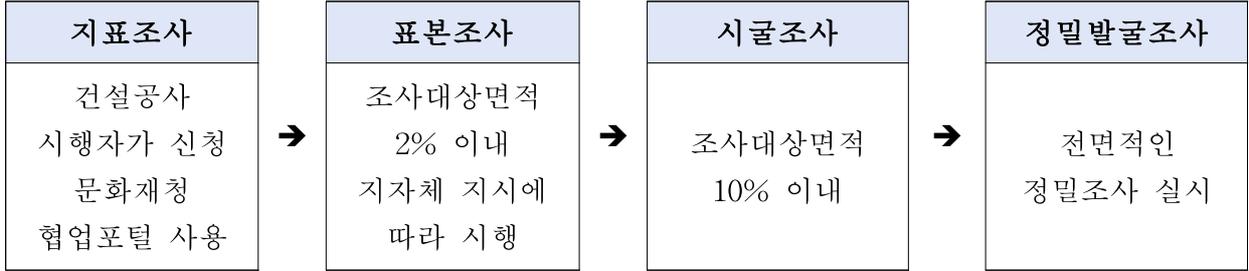
유적분류	수량	유적분류	수량
광물	2	선정비	3
산성	5	진보돈	2
제철	2	주거건축	5
불교건축(사찰)	1	마정	1
위인선현유적	1	산업생산유적	2
고인돌	5	장시	2
불상	1	기독교건축(교회)	1
봉수	1	사지	1
제당	43	사우	1
고분군	24	선사분묘	1
유물산포지	74	역원	1
근대건축	1	총효비	1
노거수	20	총 계	201

○ 위치별 유적

산하동	강동동	중산동	달천동	대안동	송정동	상안동	어물동	당사동
7	1	24	4	8	10	12	6	6
가대동	구유동	매곡동	호계동	무룡동	시례동	신명동	신천동	신현동
4	7	10	10	5	7	3	8	10
연암동	염포동	정자동	창평동	천곡동	화봉동	효문동	계	
8	4	11	11	9	7	9	201	

※ 출처 : [국가유산진흥원](#)

○ 매장유산 발굴조사 절차



- 지표조사결과 유적 확인 시 문화재청 통보에 따라 입회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등을 진행, 유적 확인되지 않으면 공사 가능하여 착공
- 지표조사 이후 조치내용 통보에 따라 표본조사(조사대상면적 2% 이내) 또는 시굴조사(조사대상면적 10% 이내)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
-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관할 시·도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

[참고] 참관조사

- 조사지역이 훼손·교란 등으로 인해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
- 참관조사는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조사
-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공사시행조치
- 유적이 확인된 경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

※ 출처 :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청](#)

1.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사업

-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시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 중

<표> 지원사업 범위 및 대상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표본·시굴> 전액(국비 지원)	단독주택 792㎡ 이하 농어업시설 2,644㎡ 이하 개인사업장 792㎡ 이하 공장 2,644㎡ 이하
	<정밀발굴> 1.5억 상한	
진단조사	<표본·시굴> 전액(국비 지원)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창고시설, 공장 * 면적제한 없음

- 국비지원은 국가유산협업포털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1년 내내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은 평생 1인 1회 지원되며 소규모 발굴조사의 표본·시굴조사는 전액 지원, 정밀발굴조사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진단조사는 표본·시굴 조사비용만 전액 지원함.

2. 법 개정을 통한 보존조치 이행비용 지원 예정

-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 8. 14. 시행)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 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 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짐.
 - 현재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해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하였으며 보존조치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음.
 - 보존조치 이행비용 지원대상·범위는 8월까지 확정하여 내년부터 지원 예정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의 지역 영향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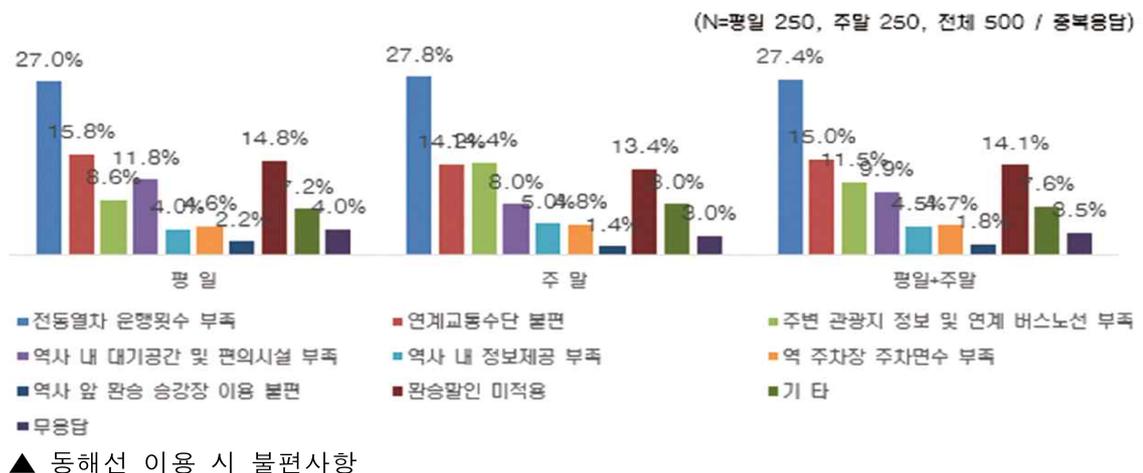
※ 교통행정과 ※ 출처 : 울산연구원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동해선이 2021년 12월 완전 개통함에 따라 울산, 부산 간 접근성이 강화되어 하나의 생활권 형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됨.
 - 동해선 개통 이후 이용객 245.6% 증가
(태화강역 기준 개통 전 2,624명 → 개통 후 9,069명)
-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으로 인한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상존함.
 - 접근성 개선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관광 활성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주거, 교육 등 기능의 경우 인구 유출을 예상하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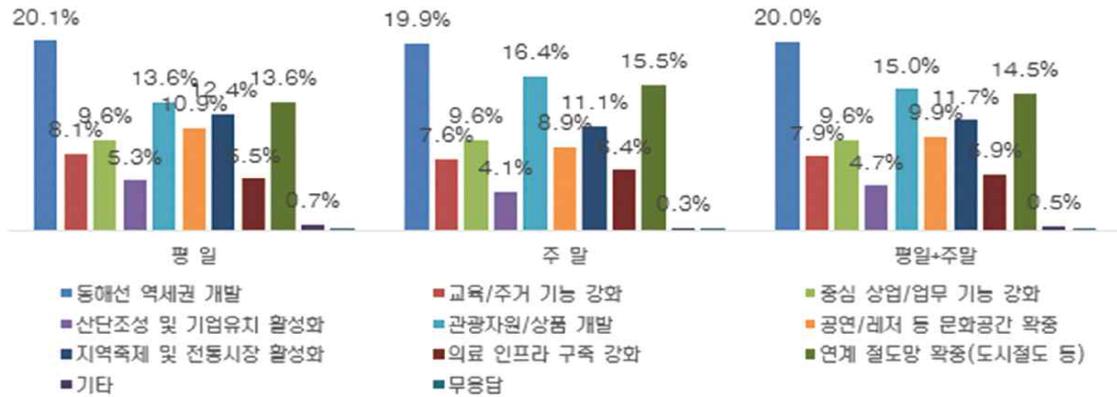
2. 동해선 통행특성 조사분석 및 지역영향분석

- 동해선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한 통행특성 조사분석 결과,
 - 이용객이 동해선을 이용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연계교통 이용편리 및 접근성 양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용저렴’, ‘짧은 소요시간’ 등의 의견이 있었음.
 - 동해선 개통 전·후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에 대해서는 통행시간은 ‘평균 25분 감소’하고, 통행비용은 ‘평균 5,540원’이 감소했음.
 - 동해선 이용 시 불편사항은 ‘전동열차 운행횟수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계교통수단 불편/환승 할인 미적용’ 등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동해선 개통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관광/레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업경제/비즈니스’, ‘쇼핑/유통’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동해선 개통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로 ‘동해선 역세권개발’, ‘연계 철도망 확충’, ‘관광자원/상품개발’의 순으로 제시하였음.

(N=평일 250, 주말 250, 전체 500 / 중복응답)



▲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

○ 지역영향분석은 크게 교통수단에 미친 영향, 인구이동(주거이동)·유통인구(활동인구)에 미친 영향 등으로 구분하였음.

- 교통수단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남. 동해선 개통으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시외버스 등 타 교통수단의 이용객 수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 명/일, %)

구분		개통 전 ('21년), ①	개통 후 ('22년), ②	개통 전 대비 증감 및 증감률	
				증감(②-①)	증감률 (②-①/①)
태화강역 (무궁화호, 일반철도)	부전역 방면	650	257	-393	-60.5
	동대구역 방면	822	612	-210	-25.5
	합계	1,472	869	-603	-41
울산역 (KTX, 고속철도)	울산역 (부산방면)	573	483	-90	-15.7
	신경주역 (서울방면)	1,301	1,347	46	3.5
	합계	1,874	1,830	-44	-2.3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울산 ↔ 해운대	959	538	-422	-44
	울산 ↔ 부산	494	372	-122	-24.7
	합계	1,453	910	-544	-37.4

▲ 이용객 수 변화(이용객 수는 승차기준)

- 주거이동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 동해선 개통과 더불어 일광신도시 개발사업은 울산 인구의 순유출로 나타남.
- 유동인구(활동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 울산에서 유출보다는 울산으로의 유입이 더 늘어나고, 동해선 통과구간의 유출입량이 미통과구간의 유출입량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됨.

3.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 대응방안은 크게 광역도시권 차원과 울산도시내 차원으로 구분하였음.

○ 광역도시권 차원

① 광역교통망의 확충

- 동해선과 연계한 도시철도 1, 2호선 철도망 확충
- 청량리~부전 구간 KTX 이음 운행 예정('25)에 따라 태화강역 등 동해선 울산 구간의 준고속철도 정차역 유치
- 부울경³⁾ 초광역 경제동맹, 해오름동맹⁴⁾ 간 광역철도망의 확충
- 울산~가덕도신공항 간⁵⁾ 대심도 급행철도 개설 추진

② 태화강역 중심의 광역 공간거점육성 및 기능 확충

- 태화강역을 울산의 중앙역으로서의 역할 추진
 - 고속철도(KTX-이음), 일반철도, 광역전철, 도시철도가 통합되는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추진
 - 산업로의 지하화 추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에 거점기능 확보 통한 주변상권의 변화 모색, 태화강 동측 둔질산 인근지역을 친환경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서측 상업기능과 연계 추진

○ 도시 내 차원

- ① 동해선 울산구간 역사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 및 특성화가 필요
- ② GB내 입지한 역사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일부 조정
- ③ 도심외곽 역사 및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새로운 연계교통수단 도입 검토
- ④ 동해선 울산 역사 중심 관광루트 개발 및 역사 인근 노후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3)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4)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구축(북울산역~신경주역~포항역·경주역)

5) 울산 공업탑~남창~노포~화명~가덕도신공항

의정활동 착안사항

☞ 태화강역 교통거점화 밑그림, 북울산역 인근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해당 연구보고서는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1, 2호선, KTX-이음 등을 활용한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2025년까지 태화강역에서 북울산역까지 광역전철이 연장되고, 북울산역과 야음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는 등 현 계획대로 철도사업이 추진된다면, 북울산역이 울산 광역교통망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구는 북울산역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역과 바로 인접한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이용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동해선 개통이 버스노선 감소로... '울산공항' 쇠퇴 대책도 마련해야

- 동해선 개통이 교통수단에 미친 영향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울산시외버스터미널은 코로나19에 동해선 개통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이용객의 30%를 차지했던 부산 노선 가운데 노포동은 폐지했고 해운대는 배차를 3분의 1로 줄이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한 변화가 눈에 띈.
- 북구에 있는 울산공항 또한 이용노선이 제주와 서울로 한정되어 있는데 KTX이음 등으로 서울간 이동시간 단축, 가덕도신공항간 연결망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면,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공항의 운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임. 철도망 구축과 더불어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함.

붙임1

동해선 역사별 주요 현황

□ 울산시 관내 동해선 역사별 연계교통시설 현황

역명	연계교통시설	시내버스 노선수		비고
		역 정류장	도보권 내	
북울산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 & Ride • Taxi & Ride • Kiss & Ride⁶⁾ • Park & 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노선 - 일반 2, 지선 3 	-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설치
태화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 & Ride • Taxi & Ride • Kiss & Ride • Park & 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개 노선 (시티투어 버스노선 포함) - 일반 39, 좌석 5, 리무진 1, 지선 1, 시티투어 1 	-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설치
개운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 & Ride • Taxi & Ride • Kiss & Ride • Park & 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노선 - 일반 5, 지선 1 	-	역사 인접 가로변(산업로) 연계교통시설 설치
덕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 & Ride • Taxi & Ride • Kiss & Ride • Park & 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노선 - 지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 노선 - 일반 21, 리무진 1, 지선 2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설치
망양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 & Ride • Taxi & Ride • Kiss & Ride • Park & Rid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노선 - 일반 8, 지선 2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설치
남창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 & Ride • Taxi & Ride • Kiss & Ride • Park & 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노선 - 지선 1, 마을 1, 마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노선 - 일반 2, 지선 2, 마을 4 	역사 인접 가로변 (남창역길) 연계교통시설 설치
서생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 & Ride • Taxi & Ride • Kiss & Ride • Park & 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노선 - 마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노선 - 일반 1 	역사 인접 가로변 (화산발리로) 연계교통시설 설치

6)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려는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는 곳. 환승정차구역.

□ 울산시 관내 동해선 역사별 1일 평균 이용객 수

(단위 : 명/일, %)

구분	개통 전	개통 후												개통 전 대비 증감 및 증감률		
	(‘21년), ㉑	(‘22년), ㉒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㉒-㉑)	증감률 (㉒-㉑)/㉑
북울산역	1,324	944	756	691	695	867	1,069	1,006	1,030	1,016	980	1,102	1,006	1,052	-380	-28.7
태화강역	2,624	9,069	10,295	7,464	6,902	9,056	11,066	9,443	8,887	8,833	8,412	10,178	9,048	8,830	6,445	245.6
광역전철	-	7,347	8,663	6,060	5,632	7,435	9,137	7,683	7,047	6,966	6,676	8,195	7,248	7,046	-	-
무궁화	2,624	1,722	1,632	1,404	1,270	1,621	1,929	1,760	1,840	1,867	1,736	1,983	1,800	1,784	-	-
개운포역	-	363	331	276	297	376	402	415	379	351	355	383	392	372	363	-
덕하역	204	831	816	636	670	841	969	889	833	792	797	917	892	871	627	307.4
망양역	-	417	369	331	336	414	454	434	437	411	425	448	457	462	417	-
남창역	721	2,189	2,091	1,716	1,721	2,208	2,297	2,161	2,095	2,008	2,055	2,403	2,299	2,124	1,468	203.6
광역전철	-	2,090	2,091	1,716	1,721	2,208	2,297	2,161	2,095	2,008	2,055	2,403	2,196	2,029	-	-
무궁화	721	99	-	-	-	-	-	-	-	-	-	-	103	95	-	-
서생역	-	872	732	652	727	912	919	912	918	925	904	964	961	891	872	-

주 : 개통 전 이용객 수는 무궁화호 승하차 인원이며, 북울산역은 호계역 승하차 인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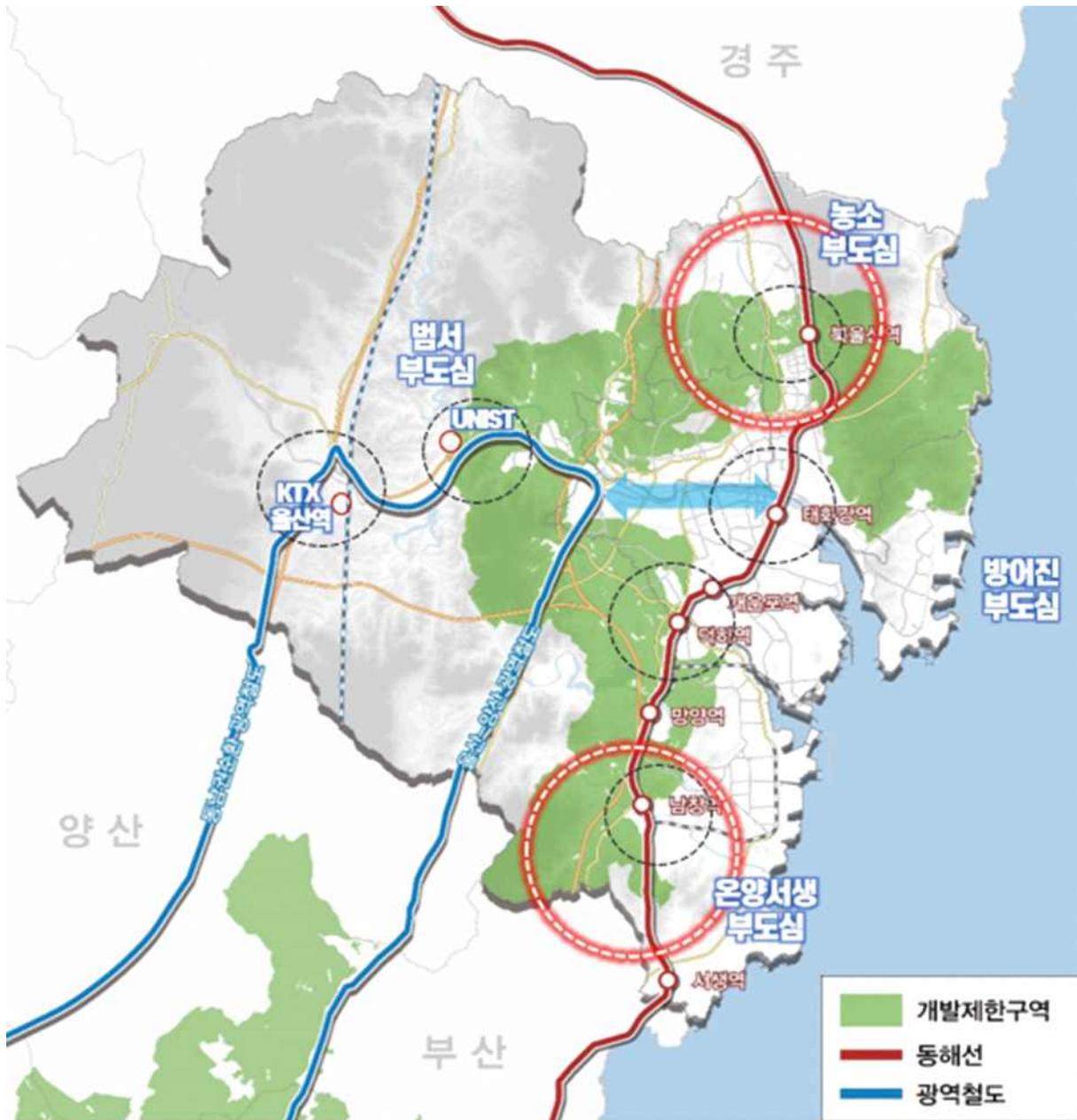
□ 총이동(유입+유출, 평일) (2022년)

동해선 울산역	인근 주요 관광자원	비고 (이용객 수)*
태화강역	도심 문화상업시설, 울산대공원(울산박물관), 태화강국가정원(울산시립미술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고래박물관·고래문화마을), 동구 대왕암공원(슬도) 등	9,069
개운포역	선암호수공원, 울산대공원(울산박물관)	363
덕하역	덕하시장	831
망양역	옹기마을, 온산국가산단	417
남창역	옹기마을, 남창옹기종기시장, 남창천, 진하해수욕장	2,189
서생역	간절곶,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진하해수욕장	872
북울산역	박상진 호수공원	944

자료 : 울산광역시(2022), 동해선 개통후 역사 1일 평균 이용자 수 (이용자수는 광역전철과 무궁화호(누리호 포함) 이용객수를 합한 값임)

주 : 개통 후(2022) 동해선 울산구간 1일 이용객(일평균)

□ 동해선 울산구간 주요 역사와 개발제한구역



[연속] 울산버스터미널 통합 지지부진 이유는?

이용주

2024년 06월 18일 22시 08분 40초

글자 크기 + -

인쇄



[앵커]

울산MBC는 고사 위기에 몰린 버스터미널의 생존법을 찾는 연속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울산의 버스터미널 운영 실태를 점검해 봤는데요.

지난해부터 울산시와 롯데가 시외와 고속버스터미널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문을 연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7개 노선 가운데 서울과 광주, 전주 3개 노선만 남았습니다.

[이두자 / 울산 남구 신정동]

그때보다 지금이 이용자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요 주위가 좀 복잡했거든요.

시외버스터미널은 코로나뿐 아니라 동해남부선 개통이라는 직격탄까지 맞았습니다.

전체 이용객의 30%를 차지했던 부산 노선 가운데 노포동은 폐지됐고 해운대는 배차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철수한 상가 한 동은 지금도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최춘금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상인]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작하면서 다 보내고 저 혼자 시작한 지가 코로나 때부터 거든요.

두 터미널 모두 승객과 노선이 줄었지만 특히 고속터미널의 사정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1년 전인 2019년과 지난해의 하루 평균 터미널 이용객을 비교해 보면 시외터미널은 43%, 고속터미널은 73%가 감소했습니다.

[김태웅 / 울산터미널 관리소장(KD운송그룹)]

월에 1천만 원 정도 적자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계약은 되어 있고 저희 공공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민간이 또 조금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울산시는 고사 직전의 터미널을 살리기 위해 소유주인 롯데쇼핑과 지난해 터미널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용도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두 곳을 합치면 나머지 한 곳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할 경우 토지 소유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울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침체 늪 빠진 울산공항 기사회생할까

2026년 울릉도 등 주요 섬 개항 지역 연결 항공 수요 증가 관측 시, 진에어에 제주 등 증편 요청 하이에어도 기업회생절차 재개



울산시가 침체된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말 첫 울산-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재개한 저비용항공사

(LCC) 진에어 측에 추가 항공편 증편을 요청하고 나섰다. 기존 울산 기반의 항공사였던 하이에어도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나타나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등 다시 울산공항 활성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따라

울산시는 만성적자로 침체된 울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항사인 진에어 측에 추가로 노선 증편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노선 증편이 해당되는 구간은 김포 1개 노선과 제주 1개 노선이다.

진에어는 지난 3월 31일부터 울산-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했다.

현재 울산공항에서는 대한항공 등을 포함해 매일 울산-김포 노선 왕복 3회와 울산-제주 노선은 왕복 2회의 운항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진에어의 울산-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 결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공항의 만성적자와 침체현상은 여전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기준) 전국 공항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울산공항은 641억원으로 네 번째로 손실액이 컸다. 울산공항을 이용객 수도 200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0년대 초반 연간 이용객 수는 100만명에 이르렀지만 지난해에는 38만명으로 가장 적었다.

진에어 중심 대형 LCC 출범 염두 포석

울산공항의 만성적자는 KTX 운행과 고속도로 신설 등 대체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항공 수요가 줄어서다. 또 울산 기반의 항공사였던 하이에어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 이에 지난 1월 울산 행정부시장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담당자들과 업무협의를 가지며 노선 증편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시는 최근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KAC) 등이 참여한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합회'에 참석해 '울산공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울산시가 진에어 측에 노선 증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배경은 추후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대형 저비용항공사의 출범을 염두해서다.

울산시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움직임에 따라 이들의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

울이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지게 된다. 항공기만 54대에 이르는 대형 LCC가 되는 셈이다.

진에어는 지난해 1조 2,772억 원의 매출을 내며 2018년 이후 5년 만에 매출 '1조 클럽'에 복귀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이에어, 우선협상대상자 나타났지만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노선중복 정리 과정에서 노선 증편 및 신설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가 증편을 요청하는 이유다.

또 오는 2026년 말 울릉공항 개항과 함께 백령도, 흑산도 소형 공항들이 들어서면, 현재보다 울산공항과 연결되는 항공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전망이다.

조현우 울산시 교통국 광역교통트립과 철도항공팀장은 "울릉공항이 개항되고 백령도와 흑산도 공항이 잇따라 생기면 울산공항을 잇는 노선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 시점에 맞춰 '섬에어' 같은 신규항공사도 울릉공항을 중심으로 취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공항의 수요 분위기는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노선 증편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공항 기반의 항공사였던 '하이에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최근 나타난 것도 울산공항 활성화의 긍정적인 신

호다. 하이에어는 지난 2017년 울산공항을 모항으로 소형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사로 출범했다. 이후 KTX 수준의 초저가를 내세우며 여객 운항에 도전했지만, 기존 저비용항공사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경영난을 겪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AOC 재취득 등 인수까지 시일 소요 전망

지난해 10월부터 인수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올해 3월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한 화물 운송 기업체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 절차가 성사되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항공 운송사업의 안전면허에 해당되는 항공여객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도 다시 취득해야 해 울산공항 기반의 항공사 복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제주노선이 재개되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장기적인 공항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노선 증편은 필수다"며 "하이에어의 기업회생상황도 미지수라, 진에어 측의 노선 증편 요청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기업체가 많은 산업도시 울산에 수요가 충분하다는 뜻을 거듭강조하면서 노선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Ⅲ. 타 지자체 입법 동향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관광진흥과

1.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해남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제3조)
- 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제5조)
- 다. 무장애 관광환경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제6조)
- 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제7조)
- 마.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제9조)

3. 입법 시사점

- 가. 올해 2월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장애인 및 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법이 강화된 바 우리 구도 이에 따른 점검 및 시책 마련이 필요함.
- 나. 우리 구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가 있으나 관광진흥계획, 관광진흥위원회, 관광업무 위탁 등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내용은 없음.
- 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 무장애 관광지 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9. 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956호, 2020. 9.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해남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 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 관광 정보 확충
5.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남군관광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
6.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전라남도, 도내 시·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제2956호, 2020.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 지자체 현황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포시 등 22곳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경주시, 울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양군 등 42곳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4. 2.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본조신설 2014. 5. 28.] [제목개정 2023. 3. 21.]

[시행일: 2024. 8. 28.] 제47조의3제1항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서울신문

2024년 05월 09일 10면 (전국)

장애인들도 신나게 즐겨요... 축제·관광 '무장애 정책' 확산

제주 공예페스티벌 '배리어프리' 축감 전시 열고 수어로 작품 설명 제주, 전국 첫 '무장애 여행주간' 숙박 등 할안에 휠체어 올레길도 여수 밤바다길 '무장애 나눔길'로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축제와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장애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어서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월 13일부터 일주일 열리는 2024 청주전통공예페스티벌을 누구에게나 열린 축제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축제 기간에 사흘간 '배리어프리 주간'을 운영한다. 배리어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다.

시는 이 기간에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예체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공예작품을 느낄 수 있는 촉각 전시회를 연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어 동역을 통한 작품설명회도 갖는다. 행사를 소개하는 리플릿은 점자로도 제작된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도 펼쳐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많은 장애인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청주장애인 협회의 머리를 맞댔"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제주 무장애 여행주간'을 운영했다. 제주지역 30개 민간업체는 제주 방문 관광 약자들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관광지 입장료 할인, 사은품 제공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제주관광공사는 1차 65세 이상 고령자, 2차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 3차 지체장애인, 4차 시각장애인 등을 20~30명씩을 초청해 2박3일 동안 캠프어를 했다. 비용은 전액 지원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올레길 10코스를 함께 둘러보는 행사도 가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방문객 중 15.9%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약자로 조사돼 무장애 여행주간을 추진하게 됐다"며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개선에 나서면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은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근 관광지 '문턱 낮추기' 사업을 마무리했다.군은 균형, 농업 기술센터 등 관광지 11곳을 대상으로 휠체어 진입로 기울기 조정, 장애인 주차장 도색, 점형블록 재시공,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와 비상벨 시공 등을 했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무장애 도시를 선포했다. 지난 2019년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길을 무장애 나눔길로 만드는 등 다양한 무장애 사업을 벌인다. 울산시는 2026년까지 3년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청주 남원우 기자

장애인도 편하고 손쉽게 여행...울산, '무장애 관광도시' 도약 박차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선정
도심정원·해양공원 권역 연계 호평
국비 40억 투입 관광교통 개선사업
벨트택시 등 취약계층 이동 편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로 울산이 최종 선정됐다.

울산시는 총 8개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이번 공모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대상지로 최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년간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22년 첫 공모에서 강릉이 선정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국경과제인 '모두를 위한 여행'과 연계해 누구나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여행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관광할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16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 천형수 울산시교육감,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시의원, 오인규 씨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수상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 있도록 관광지와 민간시설, 여행 서비스 등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무장애 관광 교통수단 도입, 숙박·식음·쇼핑 등 관광지 인근 시설 접근성 및 서비스 연계 강화, 관광 정보 제공 등 무장애 관광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울산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함께 즐기는 꿈의 도시 울산'이라는 비전 아래 벨트택시, 무장애 시터우버스 등 관광취약

계층의 맞춤형 이동 편의성을 강화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 테화강 국가 정원, 울산대공원이 있는 '도심정원권'과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이 있는 '해양공원권'으로 권역을 설정해 관광권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제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조성 예정인 열린관광지 3곳과 도심 정원권, 해양공원권, 산과 휴식권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

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거쳐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관광교통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업 예산은 올해 15억원 등 3년간(2024~2026년) 최대 국비 40억원을 지원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울산이 타 지역과는 다른 관광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재미와 편리함을 갖춘 무장애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쾌적한 관광교통과 독특한 관광

콘텐츠, 맞춤형 정보제공, 인식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를 대표하는 무장애 대표 관광지 울산을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문수체육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천형수 울산시교육감, 김영길 울산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시의원, 오인규 씨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장, 각종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태아 기자

한국일보

2024년 04월 18일
25면 (오코니언)



최영순의 신작업 101

장애 없는 여행, 무장애 관광 기획도우미

차거운 바람이 매서운 겨울은 뜨끈한 아랫목이 그리울 법하지만, 추운 계절에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 가까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 눈발이 내리며 설국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기 위해 겨울 산을 오르는 이도 있고 혹은 광장엔 호수만의 매력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혹은 어떤 이는 따뜻한 곳 어디가를 찾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바다에서 태닝을 즐기기도 한다. 물론 계절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즐기는 각종 전시, 공연, 체험을 찾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히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닌 집밖의 풍경을 즐기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미 있는 전시를 찾는데 있어 불편한 일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데 바로 '관광약자'들이다. 이들은 시정

각장애, 보행장애 등을 겪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 등도 포함되며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여행 예의를 지는 이들도 포함된다.

'무장애관광'은 이들이 여행, 쇼핑, 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열린 관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인 것에서 오는 제약 없이 보다 공간에서의 접근이나 이동 불편, 습득하는 관광정보 미흡, 동행자(가이드)의 부재 등 활동의 제약에서 비롯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5만2,86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며 매년 늘어난 고령인구 역시 불려 없이 여행하고 즐겨야 하는 대상이다.

무장애관광을 돕는 직업은 이동과 접근에 불편함을 없애고 누구나 열린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혹은 어떤 환경과 각종 장비를 갖추도록 컨설팅한다. 관광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장소와 용도에 따라 교통수단을 사전에 준비해 활체어프리트, 해변유희체어 이동식 경사로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무장애관광기획자', 그리고 무장애관광 일정을 동반하면서 여행지 안내와 함께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이용방법과 동선을 자세히 안내하는 '무장애관광가이드'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는 여행 동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도 한다.

일본의 경우 개호(간병)인력이 '트레블헬퍼' 즉, 무장애관광가이드 업무를 함께 하면서 노약자들의 여행을 돕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사회복지 간호·간병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 이해가 있다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인권에 근거한 차별 없는 공정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관광취약계층에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비롯해 서울, 경기, 대구, 제주 등 지자체에서 무장애 관광지나 시설을 발굴하고 알리는 작업과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을 통해 안전한 여행을 위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 인력이 동행하는 서비스도 지원하며 기업 차원에서도 장애인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무장애관광가이드 인력을 양성

하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국내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은 10개 미만에 불과하여 민간 부분의 활성화는 더디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는 차별화된 여행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대구광역시 복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자원순환과

1. 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추진계획의 수립(제4조)
- 라.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자발적 협약의 체결(제5조, 제6조)
- 마.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실태조사 등(제7조, 제8조)

3. 입법 시사점

- 가. 해당 조례는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음.
- 나.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전국 모든 지자체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추진 중이며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2021년부터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과 관련 폐기물 발생량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함.

라. 울산 동구는 2020년 5월 지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 10월에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선포식을 갖고 청사 안에서는 물론 각종 행사와 축제 시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며 재활용품 제품 우선 구매 등을 실천하고 있음. 북구는 작년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시작으로 지난 4월에는 byebye 플라스틱 챌린지에도 동참하였으나, 현재 관내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없으므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근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대구광역시 복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3. 7. 10.] [대구광역시복구조례 제1657호, 2023. 7.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대구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나. 대구광역시 복구의회
 - 다. 「대구광역시 복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복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 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북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 지자체 현황 >

「1회용품 줄이기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태안군,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등 84곳

「1회용품 저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가평군, 과천시, 인천 남동구, 대전 대덕구 등 58곳

IV. 참고 법제정보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소개 >
**자녀 임시위탁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보완 필요성**
 ※ 가족정책과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81호(2024. 1. 25.)

1. 빈곤 한부모와 가족의 해체

- 아동은 원가정에서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될 기본적 권리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부모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발생
-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와 이별하면서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양육시설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음.
- 한부모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현행 주거지원정책 개선 필요

2. 부모 빈곤과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1) 한부모가족의 경제 상황

-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고용률은 77.3%로 높았지만, 임시 및 일용직 비율이 높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
- 한부모가족의 소득이 전체가족 소득의 58.8%에 불과했으며, 가족 전체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자녀돌봄도 혼자 해야 하므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움.

2) 가족 해체와 보호대상 아동

- 지난 5년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17,811명이고, 이 중 953명이 부모의 빈곤 및 실직 등 경제적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됨.
- 2,664명의 이혼가정 보호대상아동 중 상당수가 부모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자녀 양육이 어려워 부모와 분리됨.

[표 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발생원인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보호대상 아동발생수	3,918	4,047	4,120	3,437	2,289	17,811	
발생 원인	부모빈곤 실직	198	265	181	170	139	953
	부모 이혼 등	737	736	539	356	296	2,664

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제도

1) 개관

- 정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기초생계수급,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도 주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국민 주택 분양 시 일정 비율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고,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제공함.

2)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정책 인지 및 활용도

- 한부모의 '자가' 거주비율은 20.7%에 불과해 일반가구 57.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세' 23.6%, '월세' 26.4%, '무상거주' 9.5%, '공공임대' 17.7% 등 주거안정성이 낮음.
- 한부모가족의 83.9%가 정부 주거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23.1%에 그쳐 제도 활용이 저조함.

4. 지원 제도 사각지대

1) 지원 자격 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세대주로서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
- 2024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이 해당됨.

2) 아동양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한부모의 경우

-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자녀의 양육시설 적응 문제, 위탁가정 돌봄 중단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생활해야 하지만 자녀를 양육시설 등에 위탁한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아 공공임대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할 주거 마련이 어려움.

5. 주거지원 대상자로 포괄하는 방안

- 자녀를 일시적으로 시설 등에 위탁한 한부모라도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임대(공동생활가정)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한부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소증 또는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양육 위탁한 한부모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6. 가족해체 예방은 아독복지 필요 조건

- 자녀양육 의사가 있는 한부모가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신청 시점의 한부모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
- 공공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운영 순환주택 모델을 도입하여 생활고로 가족해체 위기에 놓인 한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관련)

(안건번호 의견24-0126)

1. 질의 요지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배경

부천시에서는 2020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방보조금 사업을 신설·운영 중인데, 최근 지방보조금사업자가 정치 현안에 앞장서서 활동하여 해당 지방보조금사업도 정치편향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지방보조사업 교부 조건으로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요청함.

3. 회신 내용

현행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천시 조례안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제1항)와 재량이 없는 경우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제2항)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천시 조례안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2. 24. 의견제시 22-0015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법규인 조례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부천시 조례안 제16조제4항의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인 “정치적 중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어떤 행위의 유무를 조건으로 부과할지 예상하기 어려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천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구체화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같은 조례안이 적용되는 부천시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 전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나 부천시 조례안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제13조에서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부천시

소관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부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적용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각각의 보조사업별로 고유한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조례와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그 내용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이나 헌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V. 자치법규 Q&A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사항을 주민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경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A.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서 임의적·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또는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지도나 행정행위 수범자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특정 사항을 주민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할 경우 반드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등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정책·입법 동향 Q&A

자료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자료 마지막에 제시되는 '의정활동 착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책 동향은 건의안, 5분 자유발언 등의 아이디어로
참고해주시고, 입법 사례와 법제처 자료는
조례 입법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땐 이메일로 제공되는 출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정책지원관에게 문의하세요.



정책 · 입법 동향(2024년 7월, 제8호)

발 행 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발 행 일 : 2024. 7. 5.